



# 외공가정통신문

교무실	432-8997
행정실	432-0144
담당자	생 활

## 학교폭력 예방교육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1.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영상 안내(전라남도교육청 제작)

(26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안내장에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지만, 시청 부탁드립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7iVUnnjho8">https://www.youtube.com/watch?v=z7iVUnnjho8</a>
	1. 유튜브 접속하기(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2. “학교폭력 학부모 예방교육” 검색하기
	3. 첫 번째 영상 시청하기

###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3.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발로 때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행위
금품갈취(공갈)	·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빼앗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을 하는 행위

#### 4.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 절차

##### 사안처리 흐름도



#### 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2022. 9. 14.

외 공 초 등 학 교 장